

제 283회 정례회  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황인구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  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-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,  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황인구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이 발의한  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  
지금부터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 
교육현장을 비롯한 학생 생활 전반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.  
근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포항·경주 지진으로 인하여  
이재민이 발생하고,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등  
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.  
또한,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, 태풍 솔릭 등 자연재해로 인해  
학교의 휴교, 단축수업, 개학일정 연기 등이 줄 이은 바 있습니다.
  
-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진과 미세먼지,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 
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
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예방 및 교육활동은  
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.
  
-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,  
교육안전의 범위에 재난안전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(안 제5조

제8호)하고,

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법정 시수 이외에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(안 제11조 제6항)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
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